

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제2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
-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제2의 건국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(조례 제2조)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고문을 둘수 있도록 함 (조례 제3조)
-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. (조례 제8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공포(대통령령 제15903호, '98. 10. 1)되어 충청북도에서도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위원회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,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도에서 실천할 사항등이며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0인이내의 위원으로,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등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

-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(안)